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5호로 2023년 9월 6일 최봉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라. ESG 경영 성과평가 및 혜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산업발전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9. 8. ~ 9. 1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본 조례의 목적이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도입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에 있음을 명시하고,
- 안 제5조(기본계획)에서 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지원사업)에서는 ESG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8조(이에스지 경영활성화)에서는 안 제7조에 따라 지원 받은 기업 등이 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정비 등 이행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검토 결과

- ESG란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기업경영이나 투자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비(非)재무적인 요소들을 반영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서¹⁾,
- 2022년부터 EU와 미국을 비롯하여 기업의 ESG 경영실적 공시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국가가 나오게 되었음.
- 우리나라도 ESG 공시 의무화가 예고돼 있는 상태로, 2021년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의무제도를 도입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ESG경영 활동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 요소로 부상하게 됨.
-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21년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58%가 ESG경영 준비에 필요성을 느끼지만 26%의 기업만이 준비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76%는 ESG 경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중소벤처기업에서 ESG를 도입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부담(37%)과 전문인력 부족(23%)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음. 또한, 중소기업

1) ESG 구성요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핵심 키워드	기후변화대응, 탄소배출 저감, 자원절약, 청정기술 개발 등등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존중, 고용평등 및 다양성 지향 등등	기업의 투명성 제고, 법과 윤리 준수,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 등등

중앙회가 2021년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거래처로부터 ESG 관련 정보를 요구받은 중소기업은 12%였으며, 이들 기업에 ESG 관련 정보를 요구한 거래처 (복수응답)는 대기업이 77.8%로 가장 많았고 해외 거래처 (22.2%), 중소기업(5.6%), 공기업(2.8%) 등의 순이었음.

- 즉, 정부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안건은 영등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대해 ESG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및 분야별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 등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²⁾.

2) 참고로, 현재 서울시 내 5개의 자치구에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참 고 자 료

1 중소기업기본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2022. 6. 10.>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2022. 6. 10.>